정부공사 선금지급비율 상향 조정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중소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을 돕기위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의 제조 계약을 체결한 뒤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난 8월25일부터 적용·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선금지급 비율 내용을 보면 공사의 경우 □2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 21%에서 25% □5억원이상 20억미만은 20%에서 30% □3억원 이상 5억원미만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으나 3억원미만공사는 30%, 1백억원이상공사는 20%로 현행 비율 그대로 적용된다.

물품제조의 경우 □1억원이상 3억원미만은 현행 25%에서 30%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은 20%에서 25%로 각각 상향조정되었으나 1억미만은 30%, 10억원 이상은 20%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선금지급요령에 따르면 전체 공공공사의 약 65%인 5억~20억원 범위 공사의 경우 선금지급비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하여 재무부당국자는 「계약체결후 통상 20일이내에 선금을 지급하게 됨으로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계약의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선금지급비율

구분	선금지급 비율(%)	계약금액		효 과
		현행	개선	
공사	20	5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 20%→25%
	25	3~5억원	20~100억원	• 5억원이상 20억원 미만 : 20→30%
	30	3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 3억원이상 5억원 미만 : 25%→30%
물품의 제조	20	3억 이상	10억원 이상	•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 : 20~25%→25~30%
	25	1~3억원	3~10억원	
	30	1억원 미만	3억원 미만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 9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를 현행 2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축소·조형(단 전기·전기통신·전문공사의 경우는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전기·전기통신·전문공사의 경우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85%이상 입찰자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게 한다.

또 덤핑입찰방지를 위해 연관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즉 면고권을 배제하는 한편 100억원 이상 지하철·댐·교량등 14종의 특수공사에 대한 부대입찰제도입등의 공사 계약제도 개선 내용르 골자로 한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9월9일 의결, 9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적용대상공사

의 축소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방지와 더불어 특히 100억원미만 중소규모공사입찰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체간의 심한 과당경쟁에서 이들 업체는 보호군자하는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100억원이상공사중 지하철·댐·교량등 14종 특수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때 산출내역서에 시공중 하도급할 부분과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 예정자를 별도로 기재해 입찰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최저가낙찰제공사에 대한 덤핑입찰방지대책을 강화하여 예정가격의 50%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일로부터 2년동안 당해공사와 시공구간이 중복되거나 접속되는 □단지조성공사 □하천·항만·공항·도로·철도공사 □상하수도·농지개량·준설공사 등의 입찰에는 참가자격 즉 연고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차액보증금납부를 강화하여 이제까지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서의 경우는 차액의 2배)중 선택하여 차액보증금을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때에는 차액보증금중 예정가격의 85% 상당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했고 대가지급지면이자 면제제도를 폐지, 법정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지급대가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설계변경을 억제, 시키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10%이상 증액될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덤핑낙찰된후 시공중에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증액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부 기존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이다.

내년7월부터 건설공사에 「산재 개별실적요율제」 적용키로

노동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개별실적요율제 적용등을 주요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중 건설공사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은 최근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의 재해율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에 건설업의 재해율과 사망율은 매년 증가하여 전체재해의 33.7%, 사망재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급여중 건설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40%에 가까워 작년의 경우 총보험급여액 9천3백15억7천만원중 3천7백2억7천만원에 달함에 따라 재해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증감함으로써 산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어 재해예방을 촉구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각기업의 재해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반요율을 적용하는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일반요율에 업체의 재해율을 감안하여 일정비율을 가감하여 보험율을 책정하게 되어 「부담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연대성 원칙에는 위배당하기도 하나 각 업체별 재해율을 바탕으로 일정비율의 보험요율을 가감하여 보험의 공평성 원칙을 적용, 재해를 줄인다는 목적이 있다.

건설공사, 개별실적요율제는 건설업이 수주산업인만큼 업체별이 아니라 공사단위별로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대상규모는 현재 12만여개에 이르는 공사현장중 총공사금액이 일정규모이상 (1백억이상 공사에 적용될 것이 유력)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키로하고 행정능력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보험료는 건설현장 준공때마다 일정기간이 경과한후 수지율 (보험급여/보험료)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개별요율을 계산하고 결정해 해당공사에 소급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 즉 각 건설공사현장단위별로 준공후 일정시점에서 현장재해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여액과 개산보험료를 기초로 보험수지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에 따라 40% 범위내에서 일반요율에 가감하여 개별요율을 산출, 이 개별요율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를 계산해 계산보험료와 차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건설공사에 대한 개별요율제도는 적용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게 된다.

전문건설업체 직업훈련분담금부담 과다

직업훈련분담금이 건설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이 아닌 전년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가 노동부에 내야하는 직업훈련 분담금이 경우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보다 3배나 많아 개선이 요구되어지는 실정이다.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은 상시 종업원 1백50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이 아닌 전년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노동부가 직업훈련원 의무업체를 정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가 기능공에 대한 직업훈련비로 노동부에 내야하는 직업훈련 분담금이 일반건설업체보다 경우에 따라 3배나 많아 개선이 요구되어지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중소기업, 중규모기업, 대기업의 분류시, 상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기준인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노무위주의 영세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보다 훨씬 많은 직업훈련 분담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의 경우 지난해 공사실적액 50억 6천5백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에 대해 직업훈련분담금 의무를 지우고있어 상시종업원 20~30명 정도에 불과한 전문건설업체가 직업훈련 실시 대상업체로 분류되고 있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훈련의무기준 공사실적액 산정시 의무기준인원〔1백50인〕, 연간근로일수, 노임단가평균액을 곱한 뒤 이를 노무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준인원에 일용근로자도 포함시키고 노임단가평균액은 실제 임금의 80% 수준인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며 특히 건설업체의 상시 종업원중 관리직 사무직의 높은 임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종업원 전체에 대해 노임단가평균액을 일률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실적액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전문건설협회는 노동부에 건설업으로 단순 분류한 직업훈련 기본법 시행령을 건설업중 「전문건설업과 운전자 딸린 건설방지임대법을 제외한 업종」으로 세분해 줄것을 건의했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직업훈련분담금 부과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은 직업훈련분담금을 내지 못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압류처분당해 공사중단사태를 빚는 등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

전문건설협회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시종업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공사실적액 산정시 정부노임이 아닌 실제 시중노임을 적용할 것과 직업훈련비용을 일반건설업체의 50%수준으로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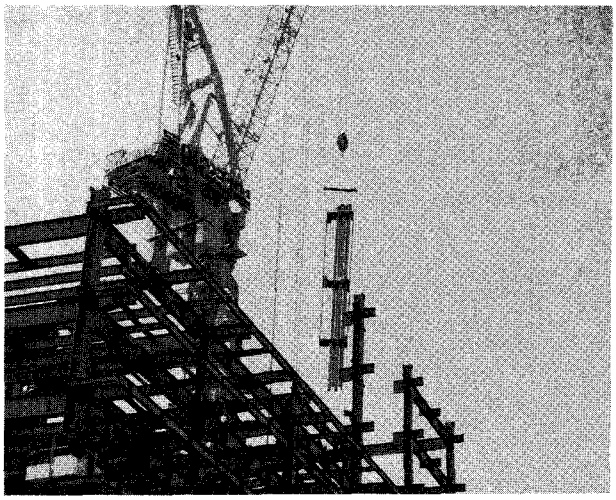

신기술 지정신청 및 보호대상 관련법

최근 건설업계는 건설업의 UR개방에 대비하여 공사비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의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술개발을 통한 공법개선은 향후 개방화 경쟁시대에서 국내 건설업계가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업체의 사·활이 걸릴 만큼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건설업계가 개발한 신기술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89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새로운 건설기술의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무단사용 규제 및 보호하고 있다.

건설부는 신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료를 현행 개발비의 5% 이내에서 당해 총공사비의 3%로, 보호기간을 현행 1년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설부가 고시한 신기술은 녹생토 암절개면 보호공법과 교량신축이음장치, 자체반력을 이용한 파일제하 시험장치, 하수차지관거 준설공법 등 4건이며 이 공법은 모두 건축·토목·분야로서 기계설비분야의 관심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신기술 지정 신청 및 보호대상등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령이다.

건설기술관리법령

제18조 (새로운 건설기술의 보호) ①건설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된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와 관련되는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부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등 무단사용을 규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하는등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고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개발 또는 개량 소요된 기간 및 비용
5. 활용현황 및 앞으로의 활용계획
6.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7.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적·경제적인 파급효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당해 신기술의 실용화가 가능하게 된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신기술의 결정·고시) ①건설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고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90일이내 신기술로의 고시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기술고시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된 신기술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시험 및 시험시공등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건설부장관은 신기술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법 제9조제3호의 건설기술정보센터에 통지하여 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및 기간
3. 기타 신기술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 (신기술의 보호)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기술사용자로부터의 기술사용료의 지급. 다만, 이 경우의 기술사용료는 당해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소요된 비용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에 대한 신기술의 우선사용권고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는 당해 신기술의 공고일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고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로의 고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를 제출함에 있어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